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36

발의연월일: 2022. 9. 29.

발 의 자: 강기윤·전봉민·김용판

서범수 · 김선교 · 박성중

김도읍 • 윤상현 • 박형수

김석기 • 윤주경 • 서정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대여사업을 할 수 있고,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서 실시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향후 위기가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도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국민연금공단자금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

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	등) ①
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	
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	
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
	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u>9.</u> (생 략)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